

디지털 대한민국 정책 시리즈 제3호

# 디지털 기본권에 대한 소개와 주요국의 동향

정지형

본 보고서는 ETRI 기술정책연구본부 주요사업인  
“국가 지능화 기술정책 및 표준화 연구”를 통해 작성된 결과물입니다.



## ◆ 요약 ◆

필자를 포함한 연구진들은 지금 이 시점에도 많은 분야에서 성공적인 디지털 탈바꿈이 일어나고 있지만 국민들이 희망하는 디지털 탈바꿈이 과연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되었다. 예컨대 플랫폼의 알고리즘은 다양한 불평등을 만들어내고 있지는 않은지, 자동화된 무인 키오스크는 어르신들의 일상생활에서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전개되고 있지는 않은지, 맞춤형 추천서비스는 우리 사회의 확증편향을 심화시켜 갈등을 증폭시키는 도구가 되고 있지는 않은지 등을 숙고해 보아야 한다.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개인, 사회, 산업, 공공분야의 문제를 혁신적 디지털 기술을 통해 해결해 가는 것이 지금까지의 디지털 탈바꿈이라면 앞으로 우리나라의 디지털 전략은 디지털 탈바꿈을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다양한 부작용 해결까지 포함하여 우리가 실현하고자 하는 이상적인 우리나라 디지털의 선호미래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이어야 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디지털 탈바꿈은 자유로운 혁신이 이루어지고, 차별없이 공정한 기회가 창출되며, 모든 국민의 인권이 보호되고 안심할 수 있는 우리나라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미래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 필자를 포함한 연구진들은 개인, 사회, 산업, 공공의 4개 분야에 12대 정책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본고는 개인분야의 세 번째 과제인 “디지털 기본권에 대한 소개와 주요국의 동향”을 주제로 한다.

## 📖 들어가며

*디지털 네트워크의 확장과 AI 등 다양한 ICT 기술의 보급은 개인정보 규준, 기술 부작용 통제, 사회적 약자 보호 등에 관련된 법제 부문 변화를 발생시키고 있다.*

- 디지털로의 전환은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현상이다. 초고속인터넷과 스마트폰 덕분에 우리는 일상 생활 속에서 다양한 정보를 쉽게 접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디지털 네트워크에 의한 정보 접근성과 연결성은 개인 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도 중요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각 산업 부문과 경제사회 시스템 전반에서 조용하지만 급격히 진행 중인 디지털 네트워크의 확장과 디지털 데이터의 활용 증가는 4차 산업혁명이라 불리우며 수년 전부터 국내 정책의 상위에 자리잡은 개념이 되었다.
- 한편 디지털 전환과 더불어 다양한 개인정보가 여타 데이터 속에 섞여 대량으로 활용되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정보·프라이버시의 가치를 판단하고, 공공과 개인의 이해 충돌을 조정하기 위한 규준이 재정비 되어야한다는 인식이 만들어졌다.
- 또한 새로운 디지털 기술은 눈에 보이지 않는 소프트웨어에 힘입은 바가 크고 대다수 사회구성원이 이해하기 어려운 신기술인 만큼 기술 발전과 활용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져가고 있다. 또 한편으로는 각 개별 개인과 조직은 기술이 이끄는 빠른 변화가 자신을 새로운 약자로 만드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도 자라나고 있다.
- 디지털 네트워크의 확장과 AI 등 다양한 ICT 기술 활용을 제고하려는 국가적 정책 전개, 개인정보를 다루는 새로운 규준에 대한 고민, 신기술의 부작용 통제, 새로운 사회적 약자의 등장에 대한 논의 등은 세계 주요국의 법제 부문 변화를 발생시키고 있다. 법제 부문의 변화에 있어서 간과하기 쉬운 것은 법제

디지털 전환기에 인간이  
누려야 할 자유, 평등과  
같은 기본권에는 어떠한  
변화가 만들어지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현재는  
물론 미래에까지 우리가  
지켜야 할 새로운 사회적  
규준을 만드는 데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도의 기저에 자리 잡은 기본권에 대한 고민이다.

- 기본권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기본적인 권리로 정의할 수 있다. 기본권의 특성에 대해서는 여러 법리적 시각이 있을 수 있으나 기본권이 여타 권리와 가장 뚜렷하게 다른 특징은 ‘인간으로서 타고난 권리’이며 최상위법인 헌법마저도 이를 ‘창설하지 않았다’라고 보는 점이다. 이러한 기본권은 인간으로서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로서, 성별 또는 신분에 의해 달라지지 않으며 미래에도 항구히 지켜져야 할 권리로 본다. 기본권에 대한 제한은 매우 특수한 상황에서만 정당하며, 제한의 근거, 정도, 기간에 대해서는 엄격한 규칙이 지켜져야만 한다. 극단적인 예로 살인범은 타인의 기본권을 거의 완전히 파괴한 인간이지만 그 역시 인간이기에 수사, 기소, 재판 과정과 처벌의 수위에 대해 까다로운 규칙이 적용되는 것이다. 디지털 전환기에 인간이 누려야 할 자유, 평등과 같은 기본권에는 어떠한 변화가 만들어지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현재는 물론 미래에까지 우리가 지켜야 할 새로운 사회적 규준을 만드는 데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 디지털 전환기의 기본권에 대한 고민을 선도하고 있는 것은 유럽연합이라 할 수 있다. EU는 2000년대부터 시작된 디지털 네트워크와 컴퓨팅 시스템의 발전에 걸맞는 새로운 기본권을 만들어야 한다는 움직임을 보여왔다. EU의 ‘2016 EU 디지털 기본권 헌장’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권리를 디지털 전환기의 새로운 현대적 기본권으로 인지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디지털 전환기의 기본권의 밑그림을 그리려는 시도의 하나라 할 수 있다.
- 국내에서도 헌법재판소가 정보사회로의 변화를 반영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독자적인 기본권으로 사실상 인정한바 있다. 또한 지난 2018년 3월 20일 청와대가 발표했던 개헌안에서는 현행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나 통신의 자유와 같은 소극적 권리만으로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충분히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정보기본권이 명문으로 등장하기에 이르렀다. 기존 헌법에는 없었던 ‘알 권리’를 명시했고 자신의 정보를 열람하고 수정 및 삭제할 수 있는 ‘자기정보통제권’을 두었으며, 동시에 정보의 독점과 차별로 인한 문제점들을 예방하고 고치기 위한 국가의 의무를 신설한 것이다.
- 개인, 산업, 공공 등 다양한 측면을 포괄하는 전국가적 디지털 전환은 ‘알 권리’, ‘자기정보통제권’ 등과 같은 ‘정보’에 초점을 둔 기본권을 통해 해결하기에 벽찬 다양한 문제를 품고 있을 수 있다. 본 고에서는 디지털 전환기에 국가와 시민이 누리고 지켜야할 새로운 권리와 의무에 대해 주요국의 동향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EU의 디지털 기본권 논의

‘EU 디지털 기본권 헌장’은 모든 기술적 발전의 목적이자 목표는 인간의 존엄성 보장이라는 선언(제1조)으로 시작해 전체 22개의 항목을 디지털 시대에 시민이 누려야 할 기본권으로 제시하고 있다.

- EU는 2016년 12월 ‘EU 디지털 기본권 헌장’ 초안을 발표했다. 이 헌장 초안은 EU가 디지털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최초의 자료라 할 수 있다. 네트워크 전문가, 정치인, 학자, 언론인 등 전문가와 시민단체가 참여한 디지털 사회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작성된 이 문건은 디지털 기술과 그 활용, 이에 따른 순작용과 부작용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다.
- 2016 EU 디지털 기본권 헌장은 모든 기술적 발전의 목적이자 목표는 인간의 존엄성 보장이라는 선언(제1조)으로 시작해 전체 22개의 항목을 디지털 시대에 시민이 누려야 할 기본권으로 제시하고 있다.
-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보호 등과 같은 전통적 시민 권리와 궤를 같이하는 디지털 시대에서의 정보통신의 자유(2조), 디지털 분야에서의 평등권(3조), 디지털 감시감독 금지(4조), 디지털 세계에서 표현의 자유(5조), 국가 및 개인에 의한 프로파일링 제한(6조), 빅데이터 처리에 있어서의 익명화와 투명성 보장(7조), 입법자에 의한 인공지능 규제(8조), 국가기관에 의해 수집된 정보접근권(9조), 자신의 주거에서 감시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생활할 권리(제10조), 개인정보자기결정권(11조) 등이 선언의 전반부를 차지한다.
- 아울러 디지털 기술 자체에 주목하고 디지털 기술의 순기능 제고를 위한 새로운 권리들이 헌장의 후반부를 구성하는데 이들 권리는 정보기술시스템의 완전성, 기밀성, 무결성에 관한 권리(12조), 정보시스템 안전에 대한 권리(13조), 미디어에 대한 접근과 무관하게 선거와 투표에 참여할 권리(제14조), 비식별화된 방식으로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제15조), 망중립성 보장(제16조), 디지털 세계의 다원주의 및 문화적 다양성은 보장(제17조), 누구든지 디지털 세계에서 새로운 출발을 할 권리(잊힐 권리)(제18조), 디지털 세계에서 아동, 청소년 및 불우한 계층 및 취약 계층의 특별한 보호(제19조), 디지털 세계에서 교육에 대한 권리(20조), 디지털 시대에서의 노동자 보호(제21조) 그리고 디지털 시대에서의 지적재산 보호(22조) 등이다.
- EU의 디지털 기본권 헌장은 유럽 공동체 전체에 디지털 전환에 따라 시민의 기본적 권리와 국가의 역할에 변화가 생기고 있음을 인지시켰고 비슷한 시기에 독일, 프랑스 등 주요국이 국내 관련 법을 개정, 보완해나가기 시작했다.

### 독일연방개인정보보호법

‘2017년 개정된 독일연방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정보주체의 권한을 상당히 강화하여 폭넓은 삭제권(잊힐권리), 반대권, 정보이전권 등이 강조되고 있다.

- EU의 디지털 기본권 헌장,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등은 독일이 2017년 EU 회원국 최초로 자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독일의 새로운 연방개인정보보호법은 2017년 4월 27일 연방의회를, 2017년 5월 12일 연방참사원을 통과했고, 2018년 5월 25일 효력이 발생했다.
- 2017년 개정된 독일연방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정보주체의 권한에 대한 강화가 눈에 띈다. 폭넓은 삭제권(잊힐권리) 인정 범위, 반대권이나 정보이전권 등에서 정보주체의 권한 강화를 찾아볼 수 있다. 이는 독일연방개인정보보호법이 정보주체의 권리에 대한 규정에 있어서 EU 차원에서 제정된 GDPR을 직접적으로 준용하고 있기에 나타나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 GDPR에서 정보주체의 권리는 제12조부터 제22조까지, 독일연방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제32부터 제37조까지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주체의 권한은 사실상 EU의 디지털 기본권 헌장에 나타난 개인이 누려야 할 정보통신의 자유, 잊힐 권리,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과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권리들은 개인이 주체가 되는 권리로서 개인 자신의 이익, 자유 등을 위해 공권력을 가진 국가, 기관에게 행사할 수 있는 기본권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 따라서 비록 EU 디지털 기본권 헌장과는 정확하게 일치하진 않지만 결국 GDPR과 독일연방개인정보보호법에 나타난 정보주체의 권한 강화는 EU의 디지털 기본권 헌장과 토대를 같이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독일연방개인정보보호법과 GDPR

	GDPR	독일연방개인정보보호법
정보주체의 권리	①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12~14조] ② 정보주체의 열람권 [제12,15조] ③ 정정권 [제12,16,19조] ④ 삭제권(잊힐권리) [제12,17,19조] ⑤ 처리 제한권 [제12,18,19조] ⑥ 개인정보 이동권 [제12,20조] ⑦ 반대권 [제12,21조] ⑧ 프로파일링을 포함한 자동화된 의사결정[제12,22조]	① 정보주체로부터의 개인정보수집 시 고지의무 [제32조] ② 정보주체 이외로부터의 개인정보 수집 시 고지의무 [제33조] ③ 정보주체의 열람권 [제34조] ④ 삭제권(잊힐권리) [제35조] ⑤ 반대권 [제36조] ⑥ 프로파일링을 포함한 개별사안에 있어 자동화된 결정 [제37조]

※ 출처: 홍선기(2020), “독일에서의 디지털 기본권에 대한 논의”, 유럽헌법연구 제33호

프랑스 헌법재판소의 2009년 판례는 ‘인터넷 접근권’을 기본권으로 인정한 것이라는 시각과 인터넷 접근을 ‘표현의 자유’의 수단으로 인정한 것이라는 시각이 동시에 존재한다.

## 📖 프랑스의 인터넷 접근권 인정

- 2009년 프랑스 헌법재판소(Conseil constitutionnel)는 판례를 통해 ‘인터넷 접근권’(le droit d'accès à internet) 인정한 바 있다. 인터넷에 대한 접근이 어떤 경우, 어떤 수준으로 통제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이 판례는 인터넷을 표현의 자유를 위한 새로운 공간으로서 인지하게 된 상징적 판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 인터넷 접근권은 ‘국민이 자유롭게 인터넷에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는 권리 혹은 인터넷망사업자나 국가에 의해 임의적으로 인터넷망에 접근할 기회를 박탈당하지 아니할 권리’라고 할 수 있는데, 2009년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행정기관, 독립행정기관 등이 사법기관인 판사를 통하지 않고 시민의 인터넷 접근을 제한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 해당 판결을 보다 상세히 살펴보면, 우선 판결 대상은 「인터넷상의 창작물의 배포 및 보호를 지원하는 2009년 6월 12일의 법률」 중 법률안 제5조와 제10조 그리고 제11조였다.
  - 이 법률의 내용에는 ‘인터넷상의 작품의 배포 및 권리의 보호를 위한 최고기관’인 HADOPI(Haute autorite pour la diffusion des œuvres et la protection des droits sur Internet)가 인터넷에 접속한 사람이 불법 복제 등을 저지를 경우 인터넷 접속에 제재를 가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HADOPI가 가진 이 인터넷 접속 제재 권한이 위헌이라 본 것이다.
  - 헌법재판소의 판결의 근거는 1789년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제11조이며 이 조항에 의해 보장된 자유의 본질을 고려할 때, 입법자는 제재의 선고를 보장하는 관리수단들이 어떠한 것이든 간에,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보유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인터넷 접근을 차단하는 권한을 행정기관에게 부여할 수는 없다고 결정한 것이다.
- 많은 관계자들이 헌법재판소의 이 결정이 인터넷접근권을 새로운 헌법적 기본권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보았으나 한편에서는 ‘표현의 자유’의 수단으로서 인터넷 접근의 자유를 인정한 것일 뿐이라는 입장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 인터넷 접근권이 독자적인 기본권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들의 기본 입장은 인터넷에 대한 접근(l'accès à internet)은 권리 그 자체가 아니라 권리의 촉진자(facilitateur)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 국내 디지털 기본권 현황

국내 디지털 기본권에 관련된 고민은 정보 접근, 자기정보통제 등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디지털 시스템의 무결성, 보안성에 대한 권리, 고용과 노동 변화에 따른 취약계층 보호 등과 같은 기술 특성을 광범위하게 고려한 논의는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 국내에서도 디지털 전환기의 새로운 기본권에 대한 고민이 진행되어 왔다. 특히 지난 2018년 3월 20일 청와대가 발표했던 개헌안은 현행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나 통신의 자유와 같은 소극적 권리만으로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충분히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정보기본권이 명문화 되기도 했었다.
  - 기존 헌법에는 없었던 ‘알 권리’를 명시했고 자신의 정보를 열람, 수정 및 삭제할 수 있는 ‘자기정보통제권’을 두었으며, 동시에 정보의 독점과 차별로 인한 문제점들을 예방하고 고치기 위한 국가의 의무를 신설한 것이다.
- 정보화, 디지털화에 따른 새로운 기본권에 대한 고민은 법학계, 인권위원회 등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으며 표현의 자유, 정보접근의 자유, 자기정보통제, 사생활보호 등이 주요 내용을 이루어 왔다.

#### ▶ 정보기본권 범주화에 대한 기존 논의 정리 ◀

학자/유형	표현의 자유	알 권리	정보프라이버시	개인정보권	정보격차해소와 정보문화향유	기타	
권건보 (2012) (정보인권)	온라인에서의 표현의 자유	정보접근권		자기정보통제권	정보향유권		
김배원 (2006) (정보기본권)		알 권리 (정보수령권, 정보수집권, 정보공개 청구권과 정부언론에 대한 통제권)		자기정보통제권		정보통신의 기밀유지 및 정보통신의 안전과 비밀보장	정보제공권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권리)
김현철 (2010) (정보기본권)		정보접근권, 정보수집권, 정보수령권, 정보공개 청구권		정보보호권	정보의 평등 보장을 통한 정보격차해소		정보재산권
이민영 (2010) (정보인권)	표현의 자유	정보접근권	사생활권	개인정보자기 결정권	정보평등권	정보보안권	정보영업권
이인호 (2008) (정보인권)	표현의 자유	정보공개청구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 결정권	정보참여권		
황성기 (2017) (디지털 기본권)	익명 표현의 자유	인터넷접근이 용권		개인정보자기 결정권, 및 허질 권리		디지털 정보에 대한 형사절차적 권리	
국가인권위원회 (2013) (정보인권)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	정보접근권	정보프라이버시권		정보문화향유권		

※ 출처: 정필운(2018), “정보기본권 신설 동향과 지향”, 미디어와 인권권, vol. 4, no.1, 통권 5호, pp. 1-51

- 하지만 현재까지 국내에서의 정보기본권, 디지털 기본권에 관련된 고민은 EU의 디지털 기본권 헌장 등에서 보이는 디지털 시스템의 무결성, 보안성에 대한 권리, 고용과 노동 변화에 따른 취약계층 보호 등과 같은 기술 특성을 광범위하게 고려한 논의는 한계가 있다고 보여 진다.

## 📖 결어

기본권 논의에 디지털 전환의 기술적 특성을 고려하고 사회경제적인 장기 변화에 주목한 포괄적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 디지털 기본권을 좁은 의미로는 ‘디지털의 형태로 이루어진 정보에 관한 기본권’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디지털 기본권은 결국 그 보호대상이 ‘디지털 정보’라는 점에서, 디지털 정보의 속성 내지 특성에 따라 디지털 기본권의 구조, 성격, 내용이 결정될 것이다. 따라서 디지털 기본권의 구조, 성격, 내용도 기존 아날로그 정보를 중심으로 관념되었던 정보 관련 기본권과 달라져야 할 것이고, 디지털 정보의 속성 내지 특성에 부합하도록 재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국내 디지털 기본권에 대한 기존의 논의는 표현의 자유, 정보접근의 자유, 자기정보통제, 사생활보호 등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여 디지털 정보, 디지털 네트워크, 디지털 시스템이 가진 기술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 또한 디지털 기본권의 범위의 확장에 대해서 짚어볼 필요가 있다. 앞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독일과 유럽에서 논의되고 있던 디지털 기본권 현장은 그 범위를 단지 정보에만 한정하고 있지 않았다. 오히려 정보 이외에 디지털 세계에서 표현의 자유, 평등권, 주거의 자유, 선거권 및 기타 노동자 보호에 이르기까지 매우 포괄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디지털 기본권은 ‘디지털 시대(digital age or digital era)’ 내지는 ‘인터넷 시대(internet era)’의 인권으로 정리될 수도 있을 것이다. 기술 변화가 불러오는 개인의 생활 양식 변화, 사회경제 구조적 변화 등을 수반하는 디지털 시대로의 진입기에 시민, 기업, 정부의 역할, 권리, 의무에 대한 포괄적 논의가 국내 디지털 기본권 도입에 앞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유럽에서는 GDPR과 이를 반영한 독일연방개인정보보호법 그리고 유럽 디지털 기본권 현장에 이르기까지 최근 들어 디지털 기본권에 대한 논의는 그 속도를 더해가고 있으며 필요성 역시 더욱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피할 수 없는 거대한 트렌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디지털 기본권을 헌법 등에 명문화할 필요성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사회 여러 분야의 전문가와 일반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집하고 조율하는 과정을 통해 가장 합리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디지털 기본권의 내용과 범위를 탐색하고 명문화할 추진여부를 타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 참고문헌

- [1] 정재도(2020),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기본권으로서 인터넷 접근권에 관한 연구: 프랑스 헌법재판소 결정을 중심으로”, 서강법률논총 제9권 제2호
- [2] 정필운(2018), “정보기본권 신설 동향과 지향”, 미디어와 인격권, vol. 4, no.1, 통권 5호, pp. 1-51
- [3] 헌법재판소(2019), “인터넷 접근권에 대한 연구”
- [4] 홍선기(2020), “독일에서의 디지털 기본권에 대한 논의”, 유럽헌법연구 제33호

## 디지털 대한민국 정책 시리즈

- [1] 이성준, 디지털 대한민국을 위한 스마트 돌봄/복지의 패러다임 변화
- [2] 안춘모, 모든 국민의 성장 기회로서 디지털 역량 강화
- [3] 정지형, 디지털 기본권에 대한 소개와 주요국의 동향
- [4] 연승준, 사회갈등 해소를 위한 디지털 소통의 도전과 대응
- [5] 송근혜, 신뢰사회를 저해하는 허위기만정보 대응방안
- [6] 연승준, 디지털 안전 사회
- [7] 김성민, 디지털로 다시 도약하는 산업의 혁신성장
- [8] 김태한, 공정경쟁과 소비자보호
- [9] 안춘모, 안심하고 대비하는 디지털 경제 안전망 구축
- [10] 송근혜, 디지털 플랫폼 정부
- [11] 김태완, 글로벌 패권 경쟁 대응
- [12] 최새술, 탄소중립 시대의 디지털전환

---

## 저자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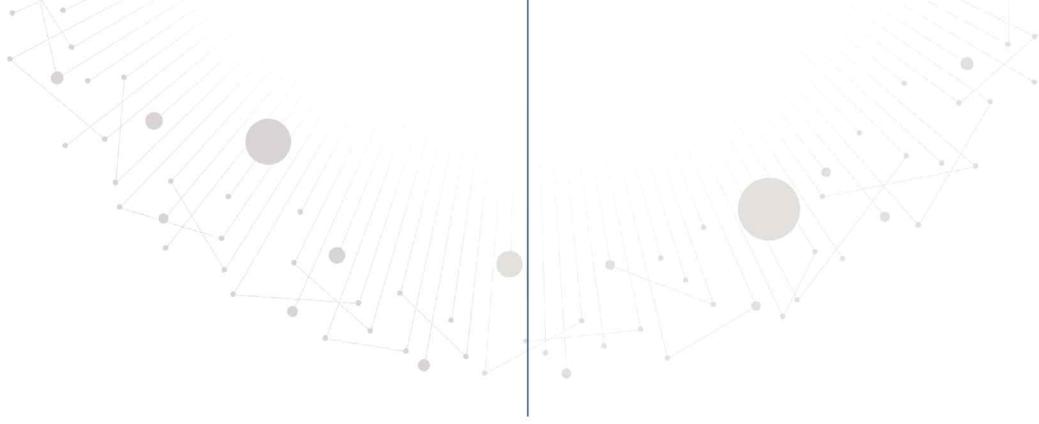
정지형 ETRI 지능화융합연구소 기술정책연구본부 기술전략연구센터 책임연구원  
e-mail: jhc123@etri.re.kr Tel. 042-860-5643

---

## 기술정책연구본부 기술정책 브리프

발행인 이 지 형  
발행처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지능화융합연구소 기술정책연구본부  
발행일 2022년 07월 31일





[www.etri.re.kr](http://www.etri.re.kr)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TRI**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Research Institute

34129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218  
TEL.(042) 860-6114 FAX.(042) 860-6504

